

■ 목 차

■ 지평지성 소식 ■

- 지평지성, 웨퍼드멀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 주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공동 세미나' 성황리 개최..... 4
- 지평지성, 전자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자소송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법무법인으로 대법원장 감사장 수상..... 5
- 심희정 변호사 영입..... 6
- 김종석 미국변호사 영입 및 미얀마 현지법인 파견..... 7
- 김형근 변호사 영입 및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파견..... 8
- 이범열 변호사 영입..... 9
- 최유진 변호사 영입 및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파견..... 10
- [공익] '2013년 사랑의 연탄나눔' 참여..... 11
- [공익] '소외계층을 위한 제빵 만들기' 활동..... 13
- [공익]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 공익 영화 관람..... 13
- [공익]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산정화 활동..... 13

■ 업무사례 ■

- 지평지성, 코라오홀딩스의 1억 5천만불 GDR 발행 및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 관련 자문.... 15
- 지평지성,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하여 태국 사뭇사콘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관련 BOT 사업 투자 자문..... 16
- 지평지성,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거절당한 시각 장애 여성을 대리하여 '구제청구 소송'에서 조정성립 이끌어내..... 17
- 지평지성,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여 5개 대학이 제기한 고시무효확인소송에서 전부 승소..... 18

■ 칼럼 ■

- 도산절차의 Fast Track..... 19

■ 최신 법령 ■

- [조세]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범위 및 사업자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 내용연수 범위의 확대 21
- [정보통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3
- [자본시장]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25
- [금융] 「볼커룰(Volcker Rule)」 최종안 승인 27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0

■ 최신 판례 ■

- [정보통신] 도메인이름의 이전 및 사용금지권리에 관한 분쟁 33
- [노동]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37
- [조세] 부동산을 전매한 행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위험성 40
- [도산] 면책결정 확정 사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 이유 해당 여부 45
- [보험] 기왕장해 존재 시 보험금 지급관계를 정한 상해보험 약관의 효력 48
- [가사] 구체화 안된 재산분할권 포기, 사해행위 취소 안돼 52

■ 단신 ■

- 이상근 변호사, '제14회 아동학대예방 세미나'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 54
- 김상준, 강울리, 김지홍, 정철, 류혜정 변호사, 정민정, 최정묵 미국변호사 IAKL(제21차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 참석 및 패널로 참여 55
- 이승현 변호사, 농촌진흥청 주최 GSP종축사업단 합동워크숍에서 '종축주권 관련 국내외 동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 外 1 56
- 정원 변호사, 삼성물산 CS팀을 대상으로 '건설하자소송의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 外 2 57

- 정철 변호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최 '미얀마 투자 세미나'에서 'Legal structure and issues of Foreign Investment in Myanmar(미얀마 외국인투자의 법적 구조와 문제)'를 주제로 발제..... 58
- 권순철 변호사,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실무'를 주제로 강의 外 1..... 59
-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 변호사, '2013 한러대화 KRD포럼' 참석 및 발제..... 60
- 주성훈 변호사, 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토론자로 참석 外 1..... 61
- 박성철 변호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학교경영자 노사관계 연수과정에서 '교원노사관계법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강의 62
- 한승혁 호주변호사, KOTRA 글로벌창업인턴들을 대상으로 '아세안 국가 투자 개관 및 국가별 비교'를 주제로 강의 外 1..... 63
- 임성택 변호사, 우체국공익재단 감사로 선임 64
- 임호 중국변호사, 중국 상해 화동이공대학교 법학원 부학장, 학과주임,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된 한국방문교류팀과 지평지성 서울 본사 방문..... 65
- 부산 사무소 이상근, 신승기, 최희원, 최달웅 변호사, 김대빈 공인회계사,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 참석 66
- 이행규, 류혜정 변호사,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참석 67
- 김성수 변호사, 대표로 재직 중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와 함께 일본 가나자와에서 진행된 '제35회 의료문제변호단 전국교류집회'에 참석 外 3..... 68

■ 지평지성 소식 ■

지평지성, 웨퍼드멀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 주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공동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웨퍼드멀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공동 세미나'가 지난 11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지성의 최진숙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을 주제로 공동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2013. 11. 7.)
- 로이슈 - 지평지성과 웨퍼드멀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2013. 11. 6.)

■ 지평지성 소식 ■

지평지성, 전자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자소송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법무법인으로 대법원장 감사장 수상

지평지성은 2013년 11월 27일 전자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자소송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법무법인으로 대법원장의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전자소송은 전자문서로 소송기록을 관리하여 자료의 열람, 이동, 저장, 관리 등 소송서면의 전자화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납부하는 인지대의 부담을 10% 절감하여 고객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지평지성의 이러한 전자소송 활용은 고객의 비용절감,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사무 처리 및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자소송제도 연구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급 법원의 전자소송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 지평지성 소식 ■

심희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심희정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11월 4일 심희정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심희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를 차석으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7년간 근무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법학석사)을 마친 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법무실 변호사(상무)로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심희정 변호사는 지평지성에서 금융·증권 업무와 M&A 및 기업·국제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평지성 소식 ■

김종석 미국변호사 영입 및 미얀마 현지법인 파견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종석 미국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10월 1일 김종석 미국변호사를 영입하였으며, 김종석 미국 변호사는 11월부터 미얀마 현지법인장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종석 미국변호사는 미국 뉴저지/뉴욕주 변호사로, 뉴저지주 지방법원의 사법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미국 로펌 Hartman & Winnicki, P.C.와 Shim & Ghim, LLC에서 송무 업무 및 회사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주)STX 및 STX 조선해양의 수석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해외 에너지/자원/인프라 투자 관련 업무 및 조선수주/발주/건조계약/분쟁조정 등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법인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평지성 소식 ■

김형근 변호사 영입 및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파견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형근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9월 23일 김형근 변호사를 영입하였으며, 김형근 변호사는 1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장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형근 변호사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여 한미 FTA 협상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법무법인 세경에서는 외국 선사들을 대리하여 국제소송, 국제거래 및 외국인 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주)LG디스플레이와 Hewlett-Packard Co. 에 근무하며 다양한 형태의 Cross-Border M&A와 JV 설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지평지성에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평지성 소식 ■

이범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범열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10월 14일 이범열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범열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개발, 구조화금융, 기업일반 자문 및 국제거래, M&A, 엔터테인먼트, 송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수행하여 왔으며, 법무법인 지평지성 금융파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지성 소식 ■

최유진 변호사 영입 및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파견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유진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11월 11일 최유진 변호사를 영입하였으며, 최유진 변호사는 11월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최유진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1기로 졸업한 후, 대우증권 법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에서 기업일반·국제거래, 해외 업무 등과 관련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지성 소식 ■

[공익] '2013년 사랑의 연탄나눔' 참여

지평지성 변호사 및 임직원 40 여 명은 지난 11 월 30 일 '2013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 월계동 녹천마을에서 열린 이번 연탄나눔 행사에 지평지성은 15 가구에 200 장씩 총 3,000 장의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웃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의 참뜻을 알아가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지평지성에서 보내는 따뜻한 손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져 울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평지성은 2005년부터 매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 <http://www.lovecoal.org>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3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2013. 11. 30.)

[공익]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을 주제로 공익강연 개최

지평지성은 지난 11 월 20 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를 모시고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을 주제로 제 3 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석유 고갈,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를 비롯하여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생겨난 여러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며 핵, 원전이 과연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일 수 있는지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3년 제3회 공익강연-원자력 발전과 방사능'(2013. 11. 20.)

[공익] '소외계층을 위한 제빵 만들기' 활동

지평지성은 지난 11월 2일 빵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빵만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지평지성 제빵 만들기 공익활동은 짝수달 셋째주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평지성 임직원 10여 명이 약 5시간에 걸쳐 개량, 반죽, 빵 굽기, 포장까지 식빵, 야채빵 등을 만들어 복지관, 지구대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공익]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 공익 영화 관람

지평지성은 지난 10월 29일 공익위원회 주관하에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 공익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는 프랑스 패트리시오 구즈먼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시체가 묻혀 있는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이 주요 무대로 이곳은 천체를 관측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어서 세계 최대의 천체관측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족의 유골 한 점이라도 찾기 위해 일평생을 바쳐온 어머니들의 지난한 걸음과 그 등을 어루만지는 광대무변한 천체의 아름다움 등이 아름답게 그려진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지평지성 공익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공익 영화를 주최하고 있으며, 공익 영화 관람을 통하여 지평지성의 구성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만남으로써 '나'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익] 지평지성과 함께하는 산정화 활동

지평지성은 10월 5일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관악산 입구부터 서너 명이 조를 이뤄 호수공원과 연주대, 국기봉 등으로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평지성의 작은 손길들이 신록이 우거진 관악산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문의]

-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http://www.gvc.go.kr>

[관련기사]

- 법률신문 - 지평지성, 관악산 정화활동(2013. 10. 10.)

[관련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 (2013. 10. 5.)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지성, 코라오홀딩스의 1억 5천만불 GDR 발행 및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코라오홀딩스의 1억 5천만불 GDR 발행 및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라오홀딩스의 GDR 발행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발행하는 첫 GDR 발행 사례입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코라오홀딩스, 1억5000만弗 GDR 발행(2013. 10. 28.)
- 머니투데이 - 코라오홀딩스 1.5억弗 GDR 발행(2013. 10. 28.)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박경택 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최정묵 미국변호사



구상수 공인회계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지성,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하여 태국 사뭇사콘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사업 관련 BOT 사업 투자 자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하여 태국 사뭇사콘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 관련 BOT 사업 투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K-Sure의 무역보험을 토대로 진행된 해외 BOT 사업으로 국내의 포스코플랜텍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지평지성은 제휴 로펌인 WCP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파이낸셜뉴스 - 교보생명 등 국내금융社, 태국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에 430억 무역보험 제공 (2013. 8. 26.)

[담당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이형규 변호사



윤재민 변호사



설일영 변호사



박경택 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구상수 공인회계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지성,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거절당한 시각 장애 여성을 대리하여 '구제청구 소송'에서 조정성립 이끌어내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거절당한 시각 장애 여성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강남구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편의제공의무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의 내용은 원고가 요가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보조인을 제공하는 것, 시각장애인에게 각종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점자자료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이 소송을 계기로 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기사]

- [에이블뉴스 - 시각 장애 여성 체육시설 이용 거부 '구제'\(2013. 12. 12.\)](#)

[담당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엄영신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지성,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여 5개 대학이 제기한 고시무효확인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저작권단체가 수업목적보상금을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저작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고시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시무효확인소송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교육기관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수업교재로 사용 때(2013. 10. 1.)

[담당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 법률 논단 ■

도산절차의 Fast Track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순철 변호사)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로 인해 신용이 추락하고, 인력 이탈이나 거래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오히려 회생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3월 이후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그 핵심은 채권자들 사이의 사전 협상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작업)과 회생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 주도로 최대한 빨리 채무조정을 마무리하여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의 내용은 회생계획 인가 전 그리고 인가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1)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는 대신 기존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불선임'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2) 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부터 주요 채권자들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채권자 주도로 신속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도모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에게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거나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 임원)를 추천하며, 자문기관(법무법인, 회계법인)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선임하는 등 자금수지감독, 기업가치평가 및 회생계획작성 등 회생계획 수립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협의회의 지위나 역할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채권자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회생계획을 마련하여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로는, (1) 출자전환 주주의 의결권행사(기업지배권 변동), (2) 채권자협의회와 채무자 사이에 '인가 후 감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및 채권자협회의 감사 추천 등 자율적 감독시스템 구축, (3) 회생계획에 따른 최초 변제 이후 조기 종결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M&A 추진 등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한 기업의 경우, 종전에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까지 평균 1년이 걸리던 것이 6개월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하며, M&A가 되지 않는 한 회생계획 수행기간(10년) 동안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것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조기종결로 즉시 시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3월 이후 사건 폭증에 따라 파산절차에서도 패스트트랙을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함으로써, 절차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파산절차는 이시폐지(파산절차비용 총당도 어려워 배당이 불가능한 사건)로 종결되어 파산채권자들에게 실제 배당이 돌아가는 경우가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패스트트랙 파산절차 또한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신 법령 ■

[조세]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범위 및 사업자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범위의 확대

임승혁 공인회계사 | 김태형 변호사

1. 개정 이유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통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算入)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計上)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사업자가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따른 금품의 추가 등(제41조제10항 및 제81조제1호라목 신설)

종교 관련 종사자의 특성과 소속 종교단체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그 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품의 80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 시행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나. 사업자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범위의 확대(제63조제5항·제6항 신설)

- 1) 사업자가 투자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2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2)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 3) 사업자가 신고하는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선택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사업자의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위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13년 1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3. 다운로드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최신 법령 ■

[정보통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최승수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1. 개정 이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1785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불법환전을 통하여 사실상 도박과 같이 이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게임제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 평가 방법(제14조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평가하도록 함.

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제23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등에 대한 수거·폐기 및 삭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별표 2 제8호 신설)

- 1)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2)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월(月) 구매한도까지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3)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게 게임물을 제공하도록 함.
-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4)

과도한 게임물 이용의 방지 조치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도한 게임물 이용의 방지 조치가 미흡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함.

3. 다운로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이행규 변호사 | 채희석 변호사 | 주성훈 변호사

최근 금융관련법령에는 주요한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반면 정부는 2013년 12월 4일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앞으로 일반 사모펀드를 비롯하여 헤지펀드와 PEF 관련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모펀드제도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 (현행)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되어 있고,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
- (개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2.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최소투자한도를 일정금액(현재는 5억원 예상)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를 제한

3.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대폭 완화

- 진입 :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현재는 PEF를 제외하고 집합투자업 인가제)
- 설립 :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 운용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 판매 :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4. 기타

-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강화

5. 다운로드 :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 최신 법령 ■

[금융] 「볼커룰(Volcker Rule)」 최종안 승인

이승현 변호사 | 안상훈 변호사

국내 금융 관련 법령은 아니지만, 미국 금융 관련 법령 중에서 기존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볼커룰(Volcker Rule. 이하 “볼커룰”) 최종안이 승인되어 소개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1. 볼커룰이란?

볼커룰이란, 2008년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를 거치면서 드러난 미국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도입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 프랭크 법(Dodd-Frank act, 정식 명칭은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중에서 제619조(section. 619 “prohibitions on proprietary trading and certain relationships with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위 입법안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Federal Reserve Chairman)이었던 폴 볼커(Paul Volcker)가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에게 제안하여 입법되었다고 하여, 폴 볼커의 이름을 따서 볼커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위 도드 프랭크 법 자체는 이미 발효가 되었지만, 볼커룰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은 미국 내 금융감독기관들(Fed, FDIC, OCC, SEC, CFTC)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최종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3년 12월 10일 위 금융감독기관들이 최종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은 2015년 7월부터 실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2. 주요 내용

볼커룰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은행 등(banking entity)이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와 헤지

펀드·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① 자기계정거래의 금지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란 트레이딩계정에서 자기자금으로(engaging as a principal for the trading account)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로서, 은행 등이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의 자금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투기적 목적 거래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 등이 자기자금으로 고위험, 고수익의 거래를 한 것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헤지펀드·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의 금지

또한, 은행 등이 헤지펀드·사모투자펀드의 지분(equity, partnership, other ownership interest)을 취득, 보유하거나 펀드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이 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역시 은행 등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은행 등의 부실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3. 전망

① 볼커룰 자체의 실효성

볼커룰은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실행되더라도 미국 내 은행들의 영업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논의되던 적용예외조항 중에서 최종안에 빠진 조항들이 있어서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② 국내 은행들에의 영향

볼커룰은 미국 내 현지법인·지점이 있는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므로, 국내 은행들의 미국 내 현지법인과 지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의 미국 내 현지법인과 지점들이 현실적으로 볼커룰의 적용 대상인 자기계정거래를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 최신 법령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배성진 변호사 | 허종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3년 10월 21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부계·모계 혈족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의 설립·취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1)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개정안 제6조)

개정안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권고된 법령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부계·모계 혈족을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부계혈족의 범위가 현행보다 줄어들게 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상의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보험종목 구분 합리화(개정안 제8조)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현행 시행령')상의 보험종목 구분이 보험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제8조 제1항 각호), 개정안은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보험종목을 통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업자) 영업기준 개선(개정안 제40조 제6항)

현행 시행령은 신용카드업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과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제40조 제6항), 업계의 현실 및 각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들의 판매 상품, 판매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을 배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개정안 제42조5 제1항)

현행 법령에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위에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제외되어 있었으나(보험업법 제95조의5 제1항, 시행령 제42조의5 제1항 제1호),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하려는 경우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개정안 제48조 제1항 제2호 등)

현행 법령은 어떤 행위가 '보험회사 등이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 등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구속성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으나(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개정안은 규제 대상 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속성 보험계약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6)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 설립·취득 절차 간소화(개정안 제59조 제14호)

현행 법령에는 '신고만으로 설립·취득이 가능한 자회사의 업종'에 해외 부동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 등이 해외 부동산업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취득하기 위해

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이 해외에서 부동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최신 판례 ■

[정보통신] 도메인이름의 이전 및 사용금지권리에 관한 분쟁

최승수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1. 판결의 요지

- (1)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2)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사실 관례

대상 판결은 'NCA'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와 등록 없이 '내셔널치어리더스 어소시에이션(National Cheerleaders Association, NCA)의 권리를 승계한 피고 사이에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① 1948년경 설립된 NCA는 1952년경부터 NCA라는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NCA 표장을 1997년 2월 11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2002년 10월 15일 유럽 상표청에 각 등

록하였으며, ② 1974년경에 설립된 '유니버설 치어리더스 어소시에이션(Universal Cheerleaders Association, UCA)'이 1992년경 현재의 피고 회사 이름인 '벌서티 스피릿 코퍼레이션(Varsity Spirit Corporation)'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8년경 피고와 NCA의 모기업인 '내셔널 스피릿 그룹(National Spirit Group)'이 합병됨으로써 피고는 NCA 상표권을 비롯한 권리를 모두 승계받게 되었고, 2008. 7. 21. NCA 표장에 관한 미국 상표권이 피고 명의로 양도등록되었고, ③ 원고는 2000. 5. 10. 도메인등록기관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거기에 'NCA Cheerleading', 'Cheerleading', 'Cheerleading Music', 'Cheerleading Outfits', 'Cheerleading Shoes' 등을 포함한 각종 검색어를 나열하고, 성인용품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3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및 치어리딩 의류와 용품 등을 판매하는 피고의 경쟁사들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를 근거로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주장했는데¹, ① 그 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② 피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반드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입법취지(원칙적으로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중복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

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함}, ②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가 종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만을 위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한 점, ③ 이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아)목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판결요지와 같은 일반론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로 도메인이름의 권리를 주장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검토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① 피고는 1948년에 설립된 전통 있는 회사로 미국 특허상표청, 유럽 상표청에도 상표를 등록하고 있었던 점, ② 반면 원고는 개인에 불과하고 검색어들을 나열하여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해 두는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비교형량하여 "정당한 권원"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론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별로 달리 내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판결요지 (1)항과 관련해서는, 그 결론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개정되기 전의 문제에 한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는 2000년 5월경 도메인이름을 등록했고, 법원은 위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던 구법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상판결의 논리를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현행 법은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을 적용범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에 따른 권리행사범위도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도메인이름

으로 한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경의 의미가 없는 인터넷의 특성과 국제화시대의 추세를 고려할 때, 정당한 권리자의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에 따른 권리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이 밝힌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 최신 판례 ■

[노동]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김성수 변호사 | 여연심 변호사

1. 판결의 요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여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사실관계

(1) B 회사는 자동차 및 장비시설용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C 회사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를 고용하여 B 회사에 파견하였다.

(2) 원고는 B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B 회사의 작업장으로 출근하여 B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B 회사가 제공하는 설비, 재료 등으로 사출작업을 하였는데, 출근 6일만에 근무 도중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이물질 제거하려다 팔 부분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3) 사출기는 200°C 이상의 고열로 고무를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로 작업자가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 당시에는 고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B 회사와 C 회사 모두 위와 같은 안전장치의 고장을 제때 확인 하지도 아니하였고, 신입사원인 원고에게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방법 등에 관한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

3. 판결의 의의

(1) 1심 재판부는 C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B 회사에 대해서는 “원고는 B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상 의무도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B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B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원고와 C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과, B, C 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이 개재된 법률관계에 의하여 원고의 노무를 지배·관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B회사는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B 회사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대법원 역시 2심 법원의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④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② 사용사업주는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등 약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재해와 관련하여 ① 사용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② 채무불이행 책임의 근거가 되는 의무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로 대법원은 사용사업주는 묵시적인 의사합치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해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사용사업주로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 위험요소를 방지하며, 산재처리로도 전보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 최신 판례 ■

[조세] 부동산을 전매한 행위에 양도소득세가 종과될 위험성

임승혁 공인회계사 | 김태형 변호사

1. 판결의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종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과세대상 소득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100분의 60의 종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3. 사실관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2002년 5월경 : 사건의 원고(매수인)가 소외 1(매도인)로부터 소외 1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1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이하 '제1 매매계약').
- ② 2002년 6월 8일 : 원고는 소외 1에게 이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외 2와 이 사건 토지를 24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2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 받음.
- ③ 2002년 7월 15일 : 소외 2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소외 2는 대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이전서류를 구비하여 소외 3에게 넘긴다는 내용 포함).
- ④ 2002년 8월 2일 : (i)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3이 참석한 자리에 동석하여 소외 3으로부터 잔금 21억 원을 지급받아 소외 1에게 7억 원을 제1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으로 지급하였고(원고는 2002년 8월 2일 이전에 소외 1에게 잔금 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음), (ii) 소외 1과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1로부터 소외 3으로 넘기기 위하여 2002년 7월 20일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소외 3명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4.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판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은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세에 관한 종전 대법원의 태도, 즉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하는 특약 등)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3408 판결)는 법리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소외 1에게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2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제1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외 2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3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소외 1에게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5. 평가

소득세법은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부동산을 전매하는 방식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행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의 “토지”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해야 하며, 대법원은 토지의 양도라 함은 그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 양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439 판결 등).

한편 대법원은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자산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 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1차 매매계약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중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439 판결), 앞서 언급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3408 판결 역시 위와 같은 기본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을 일반화한다면, 부동산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미등기전매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소지가 있었고, 이에 일정한 범위에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1차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매수인)는 ① 부동산을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매도인(소외 1)에게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했고, ②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소외 3)이 동석한 자리에 참석했으며, ③ 위 자리에서 원고 스스로 최종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매수인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판결에 따라, 추후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을 전매하는 행위가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인지,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평

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전매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6.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 최신 판례 ■

[도산] 면책결정 확정 사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 이유 해당 여부

배성진 변호사 | 배기완 변호사

1. 사실관계

甲 저축은행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2013년 6월 26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년 6월 27일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고, 이에 대해 채무자인 乙은 즉시항고를 제기함. 제1심 법원은 2013년 7월 16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림.

한편 乙은 2007년 6월 26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7년 8월 22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은 누락된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07년 9월 7일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

원심은 乙이 이 사건 집행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집행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乙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2. 쟁점

집행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면책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 집행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3.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해설

이 사건에서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면책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는 점, ② 면책결정의 확정은 그 확정 후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9. 16. 선고 2013마1438 결정

■ 최신 판례 ■

[보험] 기왕장애 존재 시 보험금 지급관계를 정한 상해보험 약관의 효력

배성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보험계약의 내용

- 피보험자는 '상해사망 및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상해 80% 미만 일반후유장애' 등을 담보하는 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
- 이 사건 보험의 상해사망후유장애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장애 부위에 기왕장애가 존재할 경우의 보험금 지급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

제5조 제9항 제1호:

이미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로 후유장애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애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 이 사건 보험의 장애분류표는 손가락의 장애를 ① 손가락을 잃었을 때, ②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③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로 구분하고, ③의 장애에 관해 "손

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라고 규정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 사건의 쟁점

- 피보험자는 기계톱 작업 중 입은 상해로 왼손 손가락 모두에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고, 그 장해지급률은 30%
- 그런데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왼손 무지 지관절 근위지 부위 2/3 가량이 절단된 장해(이하 '이 사건 기왕장해')를 가지고 있었음.

2. 쟁점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보험금 전액인지(피보험자의 주장), 아니면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에 따라 위 보험금에서 **이 사건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이 차감되어야 하는지**(보험자의 주장)가 쟁점임.

3. 항소심의 판단 - 피보험자의 주장 채택

- 피보험자의 이 사건 기왕장해는 손가락의 신경 손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왼손 무지 지관절 근위지 부위의 절단으로서 장해분류표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할 뿐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절단에 의한 장해와 운동장해는 장해의 유형이 다른 점, 장해의 유형이 같다 하더라도 **상해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그 장해가 가중되지 않는 한 기왕장해로 인한 부분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보험자는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으로서 그 성격이 **정액보험형 인보험**이라고 할 것이고, **정액보험형 인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의 유무나 실제 손해에 관계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점에서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다르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에 따라 기왕장해의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정액보험형 인보험인 상해보험을 손해보험화함으로써 보험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4. 대법원의 판단 - 보험자의 주장 채택

-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은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신체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 기존의 신체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은 보험자가 기존의 신체장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담보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정액보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5. 해설

이 사건 판결은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위험과 그 범위, 보험료율 등은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러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보험자가 명백히 규정해 둔 '기왕장애 존재 시 보험금 지급관계'에 관한 보험약관의 효력을 '정액보험형 인보험' 등 보험계약의 종류와 성격 등 막연한 근거에 의해 부정한 하급심의 판단에 제동을 건 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 최신 판례 ■

[가사] 구체화 안된 재산분할권 포기, 사해행위 취소 안돼...

최승수 변호사 | 마상미 변호사

1. 쟁점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판결 내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해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분할하는 부부 일방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 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고, 이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나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행위는 아예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부의 일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거나 또는 이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러한 처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3).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 단신 ■

이상근 변호사, '제14회 아동학대예방 세미나'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상근 변호사)

이상근 변호사가 11월 2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14회 아동학대예방 세미나'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근 변호사는 현재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부산시, 아동학대예방의 날 세미나·작품전 개최 - 뉴시스(2013. 11. 14.)
- 부산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진행 - CNB저널(2013. 11. 14.)

■ 단신 ■

김상준, 강울리, 김지홍, 정철, 류혜정 변호사, 정민정, 최정묵 미국변호사 IAKL(제21차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 참석 및 패널로 참여



김상준 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정철 변호사

정민정 미국변호사

최정묵 미국변호사

2013년 9월 27일 개최된 IAKL(제21차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정철 변호사가 세션1 'Int'l Law Firm Management: Strategies for Opening, Building, and Managing a Successful International Office'에, 9월 28일 김지홍 변호사가 세션6 'Competition: Multi-Jurisdictional Cartel Enforcement'에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IAKL 이사를 맡고 있는 강울리 변호사가 Opening Ceremony 사회를 보았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김상준, 강울리, 류혜정, 정민정, 최정묵 미국변호사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 단신 ■

이승현 변호사, 농촌진흥청 주최 GSP종축사업단 합동워크숍에서 '종축주권 관련 국내외 동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 外 1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승현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가 1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GSP종축사업단 합동워크숍에서 '종축주권 관련 국내외 동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종자 특허권과 육종권 관련 외국 분쟁 사례, 외국기업과의 종자 라이선스계약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종자 개발 전략과 유관기관 간 협업 방식에 관하여 GSP사무국, 프로젝트연구기관, 산업화전략위원회와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이승현 변호사가 11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중동·아프리카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동·아프리카소위원회는 아랍·아프리카 현지와의 교류활동을 도모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연구·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 단신 ■

정원 변호사, 삼성물산 CS팀을 대상으로 '건설하자소송의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 外 2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원 변호사)

정원 변호사가 10월 29일 삼성물산 CS팀을 대상으로 '건설하자소송의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원 변호사가 10월 17일 김포시청에서 '정비사업의 주요 분쟁 유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원 변호사가 10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요 분쟁 유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단신 ■

정철 변호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최 '미얀마 투자 세미나'에서 'Legal structure and issues of Foreign Investment in Myanmar(미얀마 외국인투자의 법적 구조와 문제)'를 주제로 발제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정철 변호사가 11월 11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주최하는 '미얀마 투자 세미나'에서 'Legal structure and issues of Foreign Investment in Myanmar(미얀마 외국인투자의 법적 구조와 문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미얀마 진출 기업지원 앞장"...SC은행, 미얀마 투자 세미나 - MK뉴스(2013. 11. 11.)

■ 단신 ■

권순철 변호사,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실무'를 주제로 강의 外 1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순철 변호사)

권순철 변호사가 11월 19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실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권순철 변호사가 10월 31일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공직 퇴임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단신 ■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 변호사, '2013 한러대화 KRD포럼' 참석 및 발제



(법무법인 지평지성 류혜정 변호사 |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11월 13일 류혜정 변호사가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여는 한-러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2013 한러대화 KRD포럼'에 참석하여 '한러 경제협력의 기반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이승민 러시아변호사는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 단신 ■

주성훈 변호사, 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토론자로 참석 外 1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성훈 변호사)

12월 18일 주성훈 변호사가 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의 과제, 유연안정성 제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 해소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 법제처 정책브리핑\(2013. 12. 18.\)](#)

11월 9일 IHCF FALL ACADEMY(2013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아카데미)에서 주성훈 변호사가 '개정 상법과 기업의 자금조달'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단신 ■

박성철 변호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학교경영자 노사관계 연수과정에서 '교원노사관계법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성철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가 11월 14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학교경영자 노사관계 연수과정에서, '교원노사관계법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단신 ■

한승혁 호주변호사, KOTRA 글로벌창업인턴들을 대상으로 '아세안 국가 투자 개관 및 국가별 비교'를 주제로 강의 外 1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승혁 호주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가 12월 13일 KOTRA 글로벌창업인턴들을 대상으로 '아세안 국가 투자 개관 및 국가별 비교'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승혁 호주변호사가 10월 2일 삼성그룹 법무전문 연수에 참석하여 '베트남 투자환경(법제 및 실무적 관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단신 ■

임성택 변호사, 우체국공익재단 감사로 선임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가 9월 3일 우체국공익재단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임기는 2015년 9월 2일까지입니다. 우체국공익재단은 우정사업본부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든 공익재단으로, 공공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영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활동합니다.

■ 단신 ■

임호 중국변호사, 중국 상해 화동이공대학교 법학원 부학장, 학과주임,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된 한국방문교류팀과 지평지성 서울 본사 방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호 중국변호사)

11월 7일 지평지성 중국 사무소 임호 변호사와 중국 상해 화동이공대학교 법학원 부학장, 학과주임,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된 한국방문교류팀이 지평지성 서울 본사를 방문하여 한국의 변호사제도 등에 대한 교류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단신 ■

부산 사무소 이상근, 신승기, 최희원, 최달웅 변호사, 김대빈 공인회계사,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 참석

[법무법인 지평지성 부산 사무소]



이상근 변호사

신승기 변호사

최희원 변호사

최달웅 변호사

김대빈 공인회계사

부산 사무소 이상근, 신승기, 최희원, 최달웅 변호사, 김대빈 공인회계사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에 참석하여 토론 및 법정, 로펌 견학 등을 통해 양국의 법률제도와 사회현상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단신 ■

이행규, 류혜정 변호사,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참석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행규 변호사](#) | [류혜정 변호사](#))

10월 15일 이행규, 류혜정 변호사가 'Securing Tomorrow's Energy Today'를 주제로 열린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계에너지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이며,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기업, 정부, 국제기구, 학계, 협회 등 모든 에너지분야 리더 및 관련자 5,000여 명이 참석하여 약 1주일간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단신 ■

김성수 변호사, 대표로 재직 중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와 함께 일본 가나자와에서 진행된 '제35회 의료문제변호단 전국교류집회'에 참석 外 3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가 11월 15일 대표로 재직 중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11명과 함께 11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일본 가나자와에서 진행된 '제35회 의료문제변호단 전국교류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16일에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가나자와 등 일본 주요 도시의 의료문제 변호단 소속 변호사 약 15명과 '한일 의료변호사회 교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日 의료문제변호단과 회합 - 법률신문\(2013. 11. 25.\)](#)

김성수 변호사가 11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전자소송에 관한 특강에 참석하여 '전자소송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9월 24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제2회 건강보장법률포럼에 참석하여 '흡연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법적 대응방안' 주제에 관한 지정토론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건보공단 이사장 “국민의견 수렴해 담배소송 결정” - 머니투데이뉴스(2013. 9. 24.)

김성수 변호사가 9월 17일 삼성그룹 법무전문 연수에 참석하여 삼성그룹 내의 법무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관련 법적 쟁점-통상임금 관련 판결의 경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